특 허 청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특허(실용신안) 심사절차 안내

우리 청에 특허(실용신안)를 출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고객님의 특허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고객상담센터 : 1544-8080

1 **먼저,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.**

⊙ 출원인적격, 필수사항기재,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,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2 **출원과는 별도로 심사를 청구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.**

⊙ 출원 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 **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하며, 기술분야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**

⊙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8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('10. 6월말 기준), 이는 미국(26개월), 일본(29개월)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.

⊙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15만여 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, 고객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**'특허로'**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 **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보내는 '의견제출통지서'를 받게 되면, 고객님께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.**

⊙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%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,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률은 약60%로 나타나고 있습니다('10. 6월말 기준).

5 **의견서 등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서를,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.**

참고

1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3~4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
2 출원내용은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 18개월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.

3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'재심사청구'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'거절결정불복심판'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 기타 자세한 내용은 **특허청 홈페이지(kipo.go.kr)**를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은 **고객상담센터**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특허(실용신안)심사 흐름도

